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29

2021. 9. 3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8월 25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9월 3일

-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・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임영은 의원)

가. 제안사유

○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과 다르게 규정된 조항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공공조형물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도록 규정함.(안 제9조)

○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서 기재사항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함. (안 별지 제1호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○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“7일 이내”, 이의신청 횟수를 “한 차례”로 제한을 한 규정을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“그 거부처분을 받은 발부터 60일 이내”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,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서(별지 1호 서식) 기재사항 중 “신청자”와 “건립대상자” 등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”를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

신 청 자	성명(단체명)		전 화	
	주 소		대상자와의 관 계 (동상인 경우)	
공공조형물 개 요	종 류		규 모	
	위 치		재 질	

「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충청북도지사 귀하

구비서류 1. 건립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

2. 대상자의 인적사항(성명, 생존기간 포함) 및 업적(동상인 경우)

3. 건립취지

4. 그 밖의 증명서류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이의신청 등) ① 제8조제3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한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	**제9조(이의신청 등)** ① 제8조제3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한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<단서 삭제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

[별지 제1호서식]

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

신 청 자	성명(단체명)		전 화	
	주 소		대상자와의 관 계 (동상인 경우)	
공공조형물 개 요	종 류		규 모	
	위 치		재 질	
건립대상자 (동상인 경우)	성명(한 자)		생년월일	
	생 존 기 간	~	생존여부	
	주요업적개요			

「충청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㊞

충청북도지사 귀하

구비서류: 1. 건립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

2. 건립대상의 인적사항 및 업적(동상인 경우)

3. 건립취지

4. 그 밖의 증명서류

개 정 안

[별지 제1호서식]

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

신 청 자	성명(단체명)		전 화	
	주 소		대상자와의 관 계 (동상인 경우)	
공공조형물 개 요	종 류		규 모	
	위 치		재 질	

「충청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충청북도지사 귀하

구비서류: 1. 건립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

2. 대상자의 인적사항(성명, 생존기간 포함) 및 업적 (동상인 경우)

3. 건립취지

4. 그 밖의 증명서류

관련법령 발췌

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–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–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– 본 개정 조례안은 이의 신청에 따른 내용을 상위 법령인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르도록 하며, 별지의 중복된 항목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